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외장
람	

제1331호 2018. 1. 29(월)

## 차 례

### 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9호 고압가스판매업 설치 허가요건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 - 1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----- 3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----- 5

#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
----- 8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4호 인천도시관리계획(시설:주차장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 
위한 열람·공고 ----- 26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0호 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중3-680호선 외 1개 노선) 공사완료  
공고 ----- 30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-19호

## 고압가스판매업 설치 허가요건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4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압가스판매업의 설치 허가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.

2018. 1. 29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고압가스판매업의 설치 허가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허가요건)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요건은 다음과 같다.

### 1. 허가지역

가. 고압가스판매업 허가는 전용·준공업 지역에 한한다. 다만, 기존업소가 공공사업시행지구 내에 편입될 시에는 녹지·관리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.

나. 「건축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학교보건법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.

### 2. 삭제

가. 삭제

### 3. 시설기준

가. 삭제

나. 고압가스판매업소는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부지로 가연성가스·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, 각각의 용기보관실 면적은 20㎡ 이상, 사무실 면적은 18㎡ 이상,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한 부지를 용기보관실 주위에 23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.

다. 판매업소는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규정된 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.

라.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 변경하여야 한다.

제3조(판매 및 취급금지) 고압가스판매업자는 허가 받은 가스 이외에는 판매 및 취급 할 수 없다.

제4조(위해방지 등) 고압가스판매업의 허가요건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5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. 다만, 동일 부지에서 안전관리 강화 등의 목적으로 저장설비를 변경하거나, 고압가스 품목 추가(가연성·독성은 제외)등으로 변경허가 할 때에는 같은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# 부 칙

### 1. 시행일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2. 시설기준 등에 대한 경과조치

이 고시 이전에 허가를 받은 업소는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### 3. 폐 지

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7-24호(2007.05.22.)는 폐지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-20호

## 지적기준점성과 고시

『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』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적기준점(지적도근점 29점)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 1. 29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■ 개 요

1. 지적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(이하 좌표와 같음)
2. 좌표

연번	지적기준점		세계측지좌표		중부좌표		계양좌표		비고
	명칭	번호	X(m)	Y(m)	X(m)	Y(m)	X(m)	Y(m)	
별지 참조									

3. 소재지와 측량연월일
  - 소재지 :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경서3구역 일원
  - 측량연월일 : 2017년 12월 08일
4. 측량성과 보관 장소
  -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

### ■ 열람안내

- 『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』 제27조에 의거 지적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서구청 토지정보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■ 문의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2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별지

연번	지적기준점		세계측지좌표		중부좌표		계양좌표		비고
	명칭	번호	X(m)	Y(m)	X(m)	Y(m)	X(m)	Y(m)	
1	지적도근점	9244	550282.41	170164.77	449976.32	170094.21	-167.58	-4671.85	
2	지적도근점	9245	550218.00	170097.14	449911.91	170026.58	-232.17	-4685.32	
3	지적도근점	9246	550152.26	170035.74	449846.17	169965.19	-298.08	-4746.54	
4	지적도근점	9247	550120.12	169959.84	449814.03	169889.28	-330.41	-4822.36	
5	지적도근점	9248	550099.24	169829.76	449793.15	169759.21	-351.63	-4952.38	
6	지적도근점	9249	550071.69	169660.66	449765.60	169590.12	-379.62	-5121.41	
7	지적도근점	9250	549937.33	169545.27	449631.24	169474.73	-514.28	-5236.46	
8	지적도근점	9251	549844.49	169453.29	449538.41	169382.75	-607.36	-5328.19	
9	지적도근점	9252	549769.10	169389.08	449463.03	169318.54	-682.92	-5392.21	
10	지적도근점	9253	549734.73	169314.35	449428.66	169243.82	-717.48	-5466.84	
11	지적도근점	9254	549670.01	169099.79	449363.94	169029.26	-782.76	-5681.24	
12	지적도근점	9255	549799.790	169102.190	449493.72	169031.66	-652.97	-5679.17	
13	지적도근점	9256	549953.890	169104.720	449647.81	169034.19	-498.87	-5677.05	
14	지적도근점	9257	550182.700	169108.960	449876.61	169038.44	-270.05	-5673.40	
15	지적도근점	1082	550220.630	169109.210	449914.54	169038.69	-232.04	-5673.38	
16	지적도근점	9258	550166.470	169184.060	449860.38	169113.54	-286.08	-5598.26	
17	지적도근점	9259	550126.340	169277.070	449820.25	169206.54	-325.97	-5505.15	
18	지적도근점	9260	550306.980	169278.810	450000.89	169208.28	-145.32	-5503.88	
19	지적도근점	9261	550395.820	169263.490	450089.72	169192.96	-56.53	-5519.43	
20	지적도근점	1091	550446.470	169080.040	450140.37	169009.51	-6.49	-5703.00	
21	지적도근점	932	550479.310	168969.930	450173.21	168899.41	26.00	-5813.18	
22	지적도근점	1090	550428.120	169288.830	450122.02	169218.30	-24.36	-5494.12	
23	지적도근점	1089	550422.100	169435.400	450116.00	169364.86	-29.98	-5347.53	
24	지적도근점	6736	550387.860	169551.050	450081.76	169480.51	-63.95	-5231.79	
25	지적도근점	1088	550383.050	169718.860	450076.95	169648.32	-68.28	-5063.96	
26	지적도근점	9262	550382.210	169749.780	450076.12	169679.23	-68.87	-5033.11	
27	지적도근점	1086	550392.620	170118.110	450086.52	170047.55	-57.62	-4664.73	
28	지적도근점	1087	550399.960	169907.870	450093.86	169837.32	-50.86	-4874.99	
29	지적도근점	914	550431.650	169171.350	450125.55	169100.82	-21.12	-5611.61	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-21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1. 29.

#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- 부여·변경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고산후로 103 외 31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유
		별도 열람		

※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-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8. 1. 29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-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-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18-01-29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28-18	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103 (당하동)	20081231	고산후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	
2	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174-1	인천광역시 서구 가현산로 196 (대곡동)	20130730	가현산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 반영	
3	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174-1	인천광역시 서구 가현산로 196-1 (대곡동)	20130730	가현산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 반영	
4	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-167	인천광역시 서구 한서로 40 (백석동)	20171025	한들지구의 서쪽에 위치	
5	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66-2	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77번길 17 (가좌동)	20090922	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6	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-81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5-23 (왕길동)	20081231	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,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7	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-102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5-50 (왕길동)	20081231	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,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8	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-105, 64-111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5-62 (왕길동)	20081231	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,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9	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-106, 64-112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5-63 (왕길동)	20081231	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,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0	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-123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5-74 (왕길동)	20081231	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,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1	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-113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5-84 (왕길동)	20081231	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,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2	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-114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5-85 (왕길동)	20081231	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,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3	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-115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5-86 (왕길동)	20081231	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,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4	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-142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5-112 (왕길동)	20081231	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,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5	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-143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5-113 (왕길동)	20081231	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,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6	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-65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7-6 (왕길동)	20081231	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,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7	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-77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7-13 (왕길동)	20081231	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,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8	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-53	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47-6 (왕길동)	20081231	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,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9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55-5	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142번길 22 (석남동, 나라카운티)	20090710	길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,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20	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99-10	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698번길 30 (가좌동)	20090710	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,9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18-01-29

21	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61-10	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133번길 30 (왕길동)	20081231	원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,3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22	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81-7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507번길 84-7 (왕길동)	20081231	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,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23	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50	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231번안길 18 (오류동)	20090922	단봉로231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	
24	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98-1	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612번길 10 (연희동)	20110630	중봉대로 시작점부터 약6120m 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로 주민의견 반영	
25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2-11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49번길 24 (경서동)	20120330	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4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26	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5-56	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14번길 23 (가좌동)	20170703	염곡로 시작지점에서 약140m지점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27	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-37	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31번안길 8 (가좌동)	20170703	장고개로 시작지점에서 약2,310m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	
28	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-38	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31번안길 10 (가좌동)	20170703	장고개로 시작지점에서 약2,310m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	
29	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73-27	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43번길 16 (가좌동)	20170703	장고개로 시작지점에서 약2,430m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	
30	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73-26	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43번길 18 (가좌동)	20170703	장고개로 시작지점에서 약2,430m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	
31	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3-22	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116번길 13 (원창동)	20171023	파랑로 시작지점부터 약 1,160m 지점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32	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3-14	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116번길 15 (원창동)	20171023	파랑로 시작지점부터 약 1,160m 지점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-142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
2018. 1. 29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- 우수창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참여율 제고
-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·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·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이루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명칭 변경
  - 특별상, 우수상, 우량상 ⇨ 금상, 은상, 동상
- 부상금 지급액 확대(최고300만원 ⇨ 1,000만원)
- 채택제안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
- 채택제안 시행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
  - 우수(특별승급), 은상 및 동상(희망부서전보)
- 상여금과 인사상 특전 중복 부여 금지
- 수상자에 대한 산업시찰기회 부여
- 관련 조례 삭제에 따른 신규 법규 적용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. 2. 19.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(참조 : 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 (우)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삼곡동) / ☎ 032-560-4123, FAX 032-560-2710 ]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### 4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##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# 1. 제안이유

- 우수창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참여율 제고
-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·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·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이루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명칭 변경
  - 특별상, 우수상, 우량상 ⇨ 금상, 은상, 동상
- 부상금 지급액 확대(최고300만원 ⇨ 1,000만원)
- 채택제안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
- 채택제안 시행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
  - 우수(특별승급), 은상 및 동상(희망부서전보)
- 상여금과 인사상 특전 중복 부여 금지
- 수상자에 대한 산업시찰기회 부여
- 관련 조례 삭제에 따른 신규 법규 적용
-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개정안 : “별지 참조”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별지 참조”
- 다. 예산수반사항 : “해당 없음”
- 라. 관계 법령 발췌 : “별지 참조”

##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

###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소속공무원”을 “소속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공무원제안”을 “공무원 제안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소속공무원”을 “소속 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중 “「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」”를 “「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기본구상”을 “기본 구상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주의환기·진정·비판·견”을 “주의 환기·진정·비판·견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담당업무”를 “담당 업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단서 중 “담당업무”를 “담당 업무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 의”를 “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제출반”을 “제출 반”으로, “명기하여”를 “명확하게 적어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전단 중 “흡결”을 “흡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산입”을 “산입(算入)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장으로 하여금”을 “장에게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관계기관”을 “관계 기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관리기간”을 “관리 기간”으로, “시행사실”을 “시행 사실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제4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특별상, 우수상, 우량상”을 “금상, 은상, 동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평가점수중”을 “평가점수 중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금상: 하나의 제안당 700만원이상 1,000만원이하
2. 은상: 하나의 제안당 500만원이상 700만원 미만
3. 동상: 하나의 제안당 30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
4. 장려상: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
5. 노력상: 하나의 제안당 1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

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실적가점부여) 구청장은 금상, 은상, 동상의 제안자에게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「지방공무원 평정규칙」 제25조의2에 따른

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2명 이상의 공동제안의 경우 실적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.

제15조의3(인사상 특전)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.

1. 금상: 특별승급(1호봉)
2. 은상 및 동상: 희망부서 전보

② 2명의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명에 한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, 3명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안자에 대하여는”을 “제안자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해당연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, “다음연도”를 “다음 연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자 및”을 “사람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인사상 특전을 받은 제안자는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없다.

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시제품”을 “시험제품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구청장은 금상, 은상, 동상의 수상자에게 가족동반 산업시찰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제18조제2항 중 “「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」”를 “「공

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결정일 부터 3년간”을 “결정일부터 3년간”으로 한다.

제22조 중 “해당기관”을 “해당 기관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관계기관”을 “관계 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증대 :”를 “증대: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의함”을 “따름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별지 제6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6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26조 중 “「공무원제안규정」”을 “「공무원 제안 규정」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.

가.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· 실용신안권 · 디자인권 ·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「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」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

나.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

다. (생략)

라. 단순한 주의환기 · 진정 · 비판 ·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

마. (생략)

2. (생략)

3. “실시제안”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.

4. ~ 6. (생략)

7. “중앙우수제안”이란 행정자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가. -----  
-----  
-----  
「공무원 직무발명의 처  
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 
규정」-----

나. -----  
- 기본 구상-----  
---

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---- 주의 환기 · 진정 ·  
비판 · 건-----  
-----

마. 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 
----- 담당 업무-----  
-----  
-----.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 행정안전

치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 
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  
을 말한다.

부장관-----  
-----  
-----.

제4조(제안의 제출) ①제안을 제  
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 
제1호서식에 따라 단독 또는 공  
동의 제안서를 연중 수시로 구  
청장에게 제출한다. 다만, 실시  
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  
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  
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  
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제안의 제출) ①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생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 
금 제안제도 의 운영에 적극  
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,  
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  
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  
어서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  
설·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 
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 
하여야 한다.

제6조(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) -  
----- 공무원에게 제안  
제도의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7조(제안의 접수) ① 제출받은  
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  
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

제7조(제안의 접수) ① 제출 받-----  
-----  
-----

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  
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8조(제안의 보완) ① 구청장은  
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 
흡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 
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  
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 
요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완  
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  
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  
니한다.

② (생략)

제9조(심사기준 등) ①·② (생  
략)

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  
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 
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  
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 
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10조(채택여부의 결정) ① (생  
략)

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 
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  
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  
심을 요청할 수 있다.

----- 명확하게 적어 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제안의 보완) ① -----  
-----  
흡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 산입(算入)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심사기준 등) ①·② (현행  
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필요-----  
-----.

제10조(채택여부의 결정) ① (현  
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 사람은 -----  
-----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의견조회 등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제안이 「특허법」·「실용신안법」·「디자인보호법」 또는 「저작권법」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.

③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12조(불채택제안의 재심)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9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-----  
-----  
장에게 -----  
-----.

제11조(의견조회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따  
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관계 기관 -----  
-----  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불채택제안의 재심) -----  
-----  
----- 관리 기간 -----  
-----  
----- 시행 사실 -----  
-----  
-----.







② (생략)

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지급한다.

④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,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.

<신설>

제17조(그 밖의 보상)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에 필요하여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토록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.

<신설>

제18조(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승계 및 보상) ① (생략)  
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는 「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」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해당 연도-----  
----- 다음 연도-----  
-----.

④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사람 및 -----  
-----.

⑤ 인사상 특전을 받은 제안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.

제17조(그 밖의 보상) ① -----  
-----  
----- 시험제품-----  
-----.

② 구청장은 금상, 은상, 동상의 수상자에게 가족동반 산업시찰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제18조(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승계 및 보상) ① (현행과 같음)  
② -----  
----- 「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

를 적용한다.

제19조(관리기간) ① 채택제안은 채택 결정일 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,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 부터 2년간 이를 보존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22조(실시의 권고)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.

제23조(실시성과의 평가) ① (생략)

② 소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평가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예산절감 또는 수입 증대 : 제안의 실시후 최초로 성과가

관한 규정」-----.

제19조(관리기간) ① -----  
-- 결정일부터 3년간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실시의 권고) -----  
-----  
----- 해당 기관 -----  
-----  
-----.

제23조(실시성과의 평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관계 기관 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.

1. ----- 증대: -----  
-----

<p>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 년간</p> <p>2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24조(실시성과의 평가방법) 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다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구 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 에 <u>의함</u>을 원칙으로 하되, 그 금 액을 산출하려면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는 공제하여 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25조(제안관리기록부) ① 구 청 장은 <u>별지 제6호 서식</u>의 제안관 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·관 리하여야 한다.</p> <p>제26조(준용)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「공 <u>무원제안규정</u>」을 준용한다.</p>	<p>----- 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4조(실시성과의 평가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- <u>따름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5조(제안관리기록부) ① ---- -- <u>별지 제6호서식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6조(준용) ----- ----- 「공 <u>무원 제안 규정</u>」-----.</p>
--	---

인천광역시서구청고 제2018-144호

## 인천도시관리계획(시설:주차장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열람·공고

인천광역시서구청고시 제2017-43호(2017.04.24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도시관리계획【시설 : 주차장, 사업명: 주차장 설치공사】 사업을 시행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.

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560-476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. 1. 29.

###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(변경없음) :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17-31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  - 종류 : 인천도시관리계획(시설:주차장)
  - 명칭 : 주차장 설치공사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최초 결정일	비 고
-	1	주차장	서구 가좌동 217-31번지 일원	1,736.7	서구청고시 제2017-43호	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  - 성명 :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  - 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, 서구청)
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(변경있음)

○ 당초 : 실시계획인가일 ~ 2017.12.31.

○ 변경 : 실시계획인가일 ~ 2018.12.31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(변경있음) : 붙임 참조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, 주소(변경있음) : 붙임과 같음

8. 열람 장소 및 기간

○ 장소 : 서구청 본관4층 도시개발과

○ 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## <용 지 조 서>

면적 이관	구분	지번	지목	지적 면적 (㎡)	면적 면적 (㎡)	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 관계	
1	기정	217-31	장	784.9	784.9	성옥순 외 5인	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198-1				
	변경	217-31	장	784.9	784.9	인천광역시서구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				
2	기정	217-32	장	255.2	255.2	성형제 외 1인	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9, 105동 303호	서인천농업 협동조합	서구 신현동 283-3	근저당권 지상권	
	변경	217-32	장	255.2	255.2	성형제 외 1인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91, 113동 101호	서인천농업 협동조합	서구 신진말로 39	근저당권 지상권	
3	기정	217-33	대	248.1	248.1	김정옥	서구 건지로318번안길 13-1	가좌2,3,4동 새마을금고	서구 가좌동 217-11	근저당권	
	변경	217-33	대	248.1	248.1	인천광역시서구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				
4	기정	217-34	장	352.2	352.2	김병일	계양구 새벌로 89, 101동 707호	주식회사 우리은행	서울 중구 소공로 51	근저당권	
	변경	217-34	장	352.2	352.2	김승후	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27번길 40	주식회사 우리은행	서울 중구 소공로 51	근저당권	
5	기정	217-35	도	94.3	94.3	성옥순 외 8인	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198-1	서인천농업 협동조합	서구 신현동 283-3	근저당권	
	변경	217-35	도	94.3	94.3	성형제 외 3인	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9, 105동 303호	서인천농업 협동조합	서구 신진말로 39	근저당권	
6	기정	217-36	장	2.0	2.0	이현호	서구 오류동 78-1				
	변경	217-36	장	2.0	2.0	인천광역시서구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				

## <지 장 물 조 서>

일련 번호	구분	지번	지목	물건의 종류	구조	토지소유자		물건소유자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
1	기정	217-31	장	주택	세와/콘크리트 블록, 토담벽	성옥순 외 5인	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198-1			
	변경	217-31	장	주택 외	세와/콘크리트 블록, 토담벽, 고물상	인천광역시서구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			
2	기정	217-32	장	재배작물	고추, 파, 콩 등	성형제 외 1인	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9, 105동 303호			
	변경	217-32	장	재배작물	고추, 파, 콩 등	성형제 외 1인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91, 113동 101호			
3	기정	217-33	대	주택	연와조/스라브	김정옥	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318번안길 13-1	김정옥	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318번안길 13-1	
	변경	217-33	대	주택	연와조/스라브	인천광역시서구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	인천광역시서구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 곡동)	
4	기정	217-34	장	공장	일반철골구조	김병일	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벌로 89, 101동 707호	김병일	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벌로 89, 101동 707호	
	변경	217-34	장	공장	일반철골구조	김승후	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27번길 40	김승후	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27번길 40	
5	기정	217-31	장	한전주	전주번호:8662 534 7 R4 L4	성옥순 외 5인	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198-1	한국전력공사 서인천지사	인천시 서구 심곡동 254-9	
	변경	217-31	장	한전주	전주번호:8662 534 7 R4 L4	인천광역시서구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	한국전력공사 서인천지사	인천시 서구 심곡로 53	
6	기정	217-34	장	채신주		김병일	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벌로 89, 101동 707호	한국통신(KT) 서인천지사	인천시 서구 탁옥로34번길 9	
	변경	217-34	장	채신주		김승후	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27번길 40	한국통신(KT) 서인천지사	인천시 서구 탁옥로34번길 9	
7	변경 없음	217-12	대	담장	콘크리트블록	김찬겸	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촌아파트 328동 1306호			
8	변경 없음	217-23	장	담장	콘크리트블록	오민우	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202동 606호			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-170호

## 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중3-680호선 외 1개 노선) 공사완료 공고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-58호(2017.5.22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-158호(2017.12.04.)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공사 완료한 인천도시계획시설 【도로: 중3-680호선 외 1개 노선, 사업명: 중로 3-680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】 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

2018. 1. 29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5-59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3-680호선 외 1개 노선)
  - 명 칭 : 중로 3-680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
3. 사업시행 규모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최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도로	중로	3	680	12	국지도로	335	소로 1-36	중로 1-69	일반도 로	2017. 5.22.	-
도로	중로	1	69	12~13	국지도로	212	가좌동 585-74	가좌동 585-74	일반도 로	1988.11.25.	-

4. 사업시행자
  - 성 명 : (주)토지산업개발 대표이사 하 영 기
  - 주 소 : 인천광역시 남구 방축로 198(도화동)
5. 사업기간 : 2017.12.04. ~ 2017. 12. 31.